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3
----------	-----

제안이유

- 직제개편에 따라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을 통한 현실화를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라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

관련법규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제4조

첨 부

1.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p> <p>③-④</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행정부지사-----</p> <p>-----</p> <p>③-④(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

제4조(부지사) 충청북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부지사

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2. 정무부지사

가.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라.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마.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바.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